

# 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09,324,904	18,279,747
일반회계	513,082,426	15,392,473
특별회계	96,242,478	2,887,274
공기업특별회계	19,777,495	593,325
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	19,777,495	593,325
기타특별회계	76,464,983	2,293,94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44,904	16,34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41,000	4,230
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1,003,888	30,117
수질개선특별회계	74,775,191	2,243,25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.

제 4 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580,3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6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